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발 간 사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저출산현상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시켜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과 세대간 인구규모의 격차로 인하여 향후 노인인구는 필연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이들 노인을 부양할 노동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증하는 중기·후기 고령층인구의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 지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저출산현상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6년에 정부는 개인과 가족의 실질적인 출산 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세부적인 실천과제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만으로 저출산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 사회의 저출산원인들이 사회 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분야의 제도들이 저출산현상을 감안하지 않고 제정됨으로써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가 될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1996년 출산억제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에서 출산억제 지향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고 관성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도간 모순이 발생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등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제도 내에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결과가 관련 제도의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실생활에 보다 근접한 정책 구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정책담당자, 학계 및 전문가 등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의 수행에 도움을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특히, 저출산대책팀의 팀장 및 팀원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전문가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조남훈 박사와 오영희 박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함을 밝힌다.

2007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요약 ····· 15

제1부 도입부 ····· 45

제1장 서론 ····· 4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47
제2절 연구내용 ····· 49
제3절 연구방법 ····· 50

제2장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적 대응 고찰 ····· 52
제1절 저출산 원인구조 ····· 52
제2절 새로마지플랜 2010의 기본구조(저출산 부문) ····· 64
제3절 연구틀 ····· 67

제3장 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는 사례 조사 ····· 70
제1절 사례조사 개요 ····· 70
제2절 사례조사 내용 ····· 72

제2부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 79

제1장 출산·양육관련 노동부문 제도개선 방안 ····· 81

제2장 출산·양육관련 보육·교육부문 제도개선 방안 ····· 137

제3장 출산·양육관련 보건·복지부문 제도개선 방안 ····· 195

제3부 결론부 ····· 243

제1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245

참고문헌 ····· 249

부 록 ····· 255

표 목 차

〈표 Ⅰ-2- 1〉 초혼연령 변동 추이 ····· 53
〈표 Ⅰ-2- 2〉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 54
〈표 Ⅰ-2- 3〉 국가별 GDP대비 공교육비 비중 ····· 57
〈표 Ⅰ-2- 4〉 자녀연령 및 자녀수별 양육비 규모 ····· 57
〈표 Ⅰ-2- 5〉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 2005 ····· 59
〈표 Ⅰ-2- 6〉 미혼남녀(20～44세) 연령별 결혼연기 이유 ····· 62
〈표 Ⅰ-2- 7〉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 63
〈표 Ⅰ-3- 1〉 제도개선 관련 심층분석 대상 사례 발굴 방법 ····· 72
〈표 Ⅰ-3- 2〉 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 사례 ····· 73
〈표 Ⅰ-3- 3〉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개선 연구에서 제외된 사례 내용· 74
〈표 Ⅱ-1- 1〉 청년층 종사상지위 변화 추이 ····· 81
〈표 Ⅱ-1- 2〉 취업여부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이유· 82
〈표 Ⅱ-1- 3〉 유배우부인(20～39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출산계획비율 · 82
〈표 Ⅱ-1- 4〉 육아휴직 활용 실적 ····· 85
〈표 Ⅱ-1- 5〉 구직급여 지급실적 ····· 87
〈표 Ⅱ-1- 6〉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실적, 2002～2005 ····· 92
〈표 Ⅱ-1- 7〉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관계 ····· 92
〈표 Ⅱ-1- 8〉 쌍둥이 이상 출생아수 추이, 2000～2005 ····· 99
〈표 Ⅱ-1- 9〉 출생아의 체중별 구성비 ····· 99
〈표 Ⅱ-1-10〉 주요 국가들의 다태아를 위한 모성휴가 제도 ····· 100
〈표 Ⅱ-1-11〉 남녀의 육아휴직 실적, 2002～2006 ····· 103
〈표 Ⅱ-1-12〉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의 가사노동시간비교 ····· 104

〈표 Ⅱ-1-13〉 징병검사 역종별 현황(2005) ····· 108
〈표 Ⅱ-1-14〉 추계에 의한 병역자원수 ····· 109
〈표 Ⅱ-1-15〉 상근예비역 입영현황 ····· 112
〈표 Ⅱ-1-16〉 2005년 상근예비역 선발결과 ····· 112
〈표 Ⅱ-1-17〉 지방별 대체인력 네트워크 구축현황(2006.9월) ····· 114
〈표 Ⅱ-1-18〉 휴직유형별 공무원 재직기간 결정기준 차이 ····· 115
〈표 Ⅱ-1-19〉 불임부부 지원실적(2006. 8. 31 현재) ····· 126
〈표 Ⅱ-1-20〉 주요 국가들의 불임지원 사업 현황 ····· 129
〈표 Ⅱ-1-21〉 국내입양아동 연령별 현황(2005) ····· 131
〈표 Ⅱ-1-22〉 국내 입양아 부모 직업별 현황 (2005) ····· 131
〈표 Ⅱ-2- 1〉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 137
〈표 Ⅱ-2- 2〉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아동 특성 ····· 142
〈표 Ⅱ-2- 3〉 현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 144
〈표 Ⅱ-2- 4〉 보육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현황(2006.6월말 기준) ····· 147
〈표 Ⅱ-2- 5〉 의무사업장의 직장보육서비스 미이행 사유 ····· 155
〈표 Ⅱ-2- 6〉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유형별 교사 근무경력 ····· 157
〈표 Ⅱ-2- 7〉 0～2세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맡기지 않는 이유 ····· 162
〈표 Ⅱ-2- 8〉 보육시설 유형 및 이용아동 현황, 2006 ····· 164
〈표 Ⅱ-2- 9〉 서울시 시설위탁 관련 표준안 ····· 168
〈표 Ⅱ-2-10〉 시도별 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기준 ····· 169
〈표 Ⅱ-2-11〉 2005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174
〈표 Ⅱ-2-12〉 자녀양육 가정의 교육비 현황(2005.3～2006.2) ····· 183
〈표 Ⅱ-2-13〉 보육시설 화재보험 가입률 추이 ····· 190
〈표 Ⅱ-3- 1〉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195
〈표 Ⅱ-3- 2〉 자녀출산 가정의 의료비 지출 사례(임신～출산후 1개월) ·· 196
〈표 Ⅱ-3- 3〉 각 지자체 조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율 · 211

〈표 Ⅱ-3- 4〉 관계 법령 등에 복제 규정이 있는 직종 현황 ····· 220
〈표 Ⅱ-3- 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추진현황 ····· 222
〈표 Ⅱ-3- 6〉 산모도우미 표준서비스 ····· 224
〈표 Ⅱ-3- 7〉 보건복지부 교육필수항목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과정 비교 · 225
〈표 Ⅱ-3- 8〉 장애여성의 임신기간 중의 애로사항 ····· 228
〈표 Ⅱ-3- 9〉 장애인여성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요구도 ····· 229
〈표 Ⅱ-3-10〉 장애인여성의 산후조리·가사도우미 서비스 요구도 ····· 232
〈표 Ⅱ-3-11〉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임기여성 건강검진사업 예시 ····· 239

그림목차

〔그림 Ⅰ-2-1〕 거시적 차원에서의 저출산 원인 구조 도식화 ····· 52
〔그림 Ⅰ-2-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 구조 ····· 55
〔그림 Ⅰ-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구조도 … 66
〔그림 Ⅰ-2-4〕 새로마지플랜2010의 시간적 한계성 ····· 67
〔그림 Ⅰ-2-5〕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틀 ·· 68
〔그림 Ⅰ-3-1〕 사례조사 부문 구성 ····· 70
〔그림 Ⅱ-1-1〕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이유 ····· 113
〔그림 Ⅱ-1-2〕 불임부부지원사업 체계도 ····· 126
〔그림 Ⅱ-3-1〕 미국의 Girl's Health 홈페이지 ····· 236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개선 대상 부문 및 주제 목록

부문	일련번호	제도 개선 대상 목록	페이지
노동 (17)	1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관련 고용안정성 강화	81
	2	◦ 계약직 공무원에 육아휴직 기회 제공	85
	3	◦ 임신·출산에 따른 실업시 구직급여 지급	87
	4	◦ 산전후휴가기간 탄력적 운영	90
	5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기 조정	92
	6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제도 개선	96
	7	◦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	99
	8	◦ 육아휴직 이용횟수 제한 완화	102
	9	◦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도입	103
	10	◦ 자녀있는 부의 출퇴근 군복무 허용	108
	11	◦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제도 실시	113
	12	◦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정부포상기준 개선	115
	13	◦ 태아검진휴가제 도입	123
	14	◦ 불임휴가제 도입	125
	15	◦ 입양에 유리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131
	16	◦ 공무원 임용유예기간에 임신·출산기간 포함	134
	17	◦ 재직기간에 임신·출산 휴직기간 포함	135
보육 교육 (20)	18	◦ 다자녀가구의 학생에 대한 대학장학금 수혜 인센티브 제공	137
	19	◦ 육아지원시설의 입소 우선순위 제도 내실화	142
	20	◦ 보육서비스 정보 공시 의무화	144
	21	◦ 직장보육시설에 자녀생활 모니터링 지원	147
	22	◦ 국·공립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151
	23	◦ 공단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153
	24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155
	25	◦ 직장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방식 개선	157

부문	일련번호	제도 개선 대상 목록	페이지
	26	◦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162
	27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원칙 정립	164
	28	◦ 국공립보육시설의 표준화된 위탁기준 마련	167
	29	◦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174
	30	◦ 보육시설의 방학 금지	177
	31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선	179
	32	◦ 육아지원시설 보육·교육비 투명화	181
	33	◦ 근로자 보육수당 지급 대상시설 확대	185
	34	◦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지원 연령기준 통일	187
	35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상해보험 강제중복가입 개선	190
	36	◦ 장애아 상해보험 가입 거부 개선	192
	37	◦ 모의 출산시 자녀인 학생의 출석처리를 경조사에 포함	194
보건 복지 (16)	38	◦ 산전초음파 검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195
	39	◦ 자연분만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수가 조정	198
	40	◦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03
	41	◦ 출산·양육 관련 의료부문 교육·상담 의료서비스 활성화	204
	42	◦ 산전후휴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방식 조정	206
	43	◦ 임산부 주차 우대	209
	44	◦ 임산부 및 유아동승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213
	45	◦ 교통시설이용 아동의 편의 도모	215
	46	◦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219
	47	◦ 특수직 임신여성을 위한 복제규칙 조정	220
	48	◦ 다태아 산모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적정화	222
	49	◦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224
	50	◦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228
	51	◦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 강화	232
	52	◦ 여성 청소년 생식기 건강 정보제공 강화	234
	53	◦ 임신 준비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	238

요 약

【제1부 도입부】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06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

□ 그러나 60년대 이래 지속된 출산억제정책이 1996년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 일부 제도의 경우 출산억제 지향적인 요소가 관성적으로 지속 가능

○ 또한, 일부 제도들은 저출산현상을 감안하지 않고 제정·실행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될 요소를 포함

○ 결과적으로 제도들간 모순이 발생하여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새로마지플랜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존재

□ 본 연구는 결혼·출산·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추가 재정부담 없이) 도출에 목적을 둠.

□ 기대효과

○ 실생활에 보다 근접한 정책 구현

○ 새로마지플랜과 상호보완적 및 시너지효과 발생

○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적정 출산수준 회복에 기여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3개의 부로 구성

○ 제1부 도입부에서는 서론에 이어, 저출산 대책의 체계화
○ 제2부는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들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 제시
○ 제3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화하고, 출산·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정책 분석, 사례 조사, 내용분석, 전문가회의 등 적용

Ⅱ.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적 대응 고찰

1. 저출산 원인구조

□ 인구학적 요인
○ 만혼 경향으로 미혼율이 상승하고, 20대 유배우출산율이 급격 감소
□ 사회경제적 요인
○ 실업과 고용불안정, 양육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가족의 육아지원기능 약화, 출산건강 악화, 양성평등적 가치관 미흡, 전통적인 자녀관·결혼관 약화 등

2. 새로마지플랜의 기본구조(저출산 부문)

□ 기본목표
○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율 회복기반 마련
□ 추진방향
○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 사회구조 혁신

□ 중점 추진과제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족-사회·국가간 분담체계 구축

○ 가족친화·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등

Ⅲ.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 사례조사

1. 사례조사 실시(대상)

□ 각 분야의 학술지, 정책보고서, 학위논문 등 문헌조사

□ 1995년 이후 국내 일간지의 기사문을 대상으로 사례조사

□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등이 발행하는 저널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민원사례 조사 및 분석

□ 관련 시설 및 단체의 담당자 면담을 통해 사례 발굴

□ 결혼·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성이 높은 법령들을 선정, 심층분석

□ 관련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사례 발굴 및 의견수렴

2. 사례분석 방법

□ 발굴 사례들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정성 분석)

○ 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의 장애 여부 및 정도

○ 장애를 겪는 대상의 유형, 규모, 정도, 지속기간 등

○ 장애 제거 장치의 유무 및 실효성

○ 장애 제거의 사회적 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성)

○ 장애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 수준

□ 최종 제도개선 대상 선정

○ 제외 대상: 재정 수요가 큰 사례,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는 사례, 장애자체가 사회 갈등 요소를 포함한 사례 등

* 제외 사례들은 추후 별도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최종 개선 대상 선정: 총 86사례 발굴 중 53건 선정

【제2부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개선 방안】

Ⅰ. 출산·양육관련 노동부문 제도개선 방안

1-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관련 고용안정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30조),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임신·출산 휴가 사용시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임신·출산 연기 또는 포기 발생

▣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 한해 계약기간 진행을 일시중지하고, 복귀 후 나머지 계약기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함.

○ 대기업 근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통한 산전후휴가 급여 제공 검토

1-2. 계약직 공무원에 육아휴직 기회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직공무원은 육아휴직을 개시일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불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서 육아휴직의 1년 이내 사용 규정에도 불

구하고, 잔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방안

○ 1년 이상 계약한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휴직 개시일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도 잔여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 검토

1-3. 임신·출산에 따른 실업시 구직급여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결혼, 임신, 출산,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직)이 관행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 관행임을 규명하기가 곤란하며,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도 '회사의 관행'을 밝혀야 하는 부담으로 구직급여 포기

○ 회사의 관행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안

○ 노동부에서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 예정

- 임신·출산·양육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1년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

1-4. 산전후휴가기간 탄력적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여성근로자는 임신초기 심한 입덧, 의사의 절대안정 처방 등으로 산전후 휴가 사용이 필요하나, 관행적으로 임신후기에만 산전후 휴가 사용을 용인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도 출산 이후로 제한

▣ 개선방안

○ 출산전후에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 기간을 임신 초기에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하게 하는 등 요건을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공무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가능(국가공무원법 제71조)

1-5.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기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부터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에는 산전후휴가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최고한도 월 135만원)
-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기업에서 지급하고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간이 약 2주간 소요되어 급여 수령에 45일 소요
- 휴가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도 2~3주가 지연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생활안정 곤란

○ 대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분 급여를 휴가 후 복직시점에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므로, 센터의 업무지연 등에 따라 급여를 상당기간 후 수령

▣ 개선방안

○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전휴가자는 휴가개시일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토록 하며, 고용안정센터는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면 즉시 지급

○ 대기업 산전휴가자의 경우, 마지막 30일분 급여를 미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전후휴가 종료시점에 지급토록 조치

1-6.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삭감(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 12)

○ 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 근로가족 육아지원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권장에 역행

▣ 개선방안

1안) 기업(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감액제도 폐지

2안) 지나친 혜택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상임금 이상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제도 유지

1-7.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다태아임부의 신체·의학적 특성을 고려않고 일률적 산전후휴가 부여

▣ 개선방안

○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단태아의 경우에 비해 1.5~2배 정도: 예시 현행 90일+쌍태아부터 1명당 45일 추가)

1안) 전 기간 모두 유급

2안) 110일까지 유, 이후 기간은 무급

3안) 90일만 유급, 이후 기간은 무급

1-8. 육아휴직 이용횟수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자녀연령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완화되는 등 육아휴직요건을 완화하였지만, 사용횟수는 1회로 한정되어 아동양육에 장애

▣ 개선방안

○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 횟수를 1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 단,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횟수(2회 정도)로 제한 필요

* 육아휴직을 남편과 부인간 분할 사용 가능토록 규정

1-9.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육아휴직이 여성근로자에게 치우쳐 있어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 곤란

▣ 개선방안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서 부성휴가 5일 도입 추진

○ 육아휴직의 '남편할당제' 도입 추진

-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기간을 남편이 사용토록 보장(기간할당형)

1안) 육아휴직기간 1년 중 최소 1개월 이상을 남편이 이용하도록 강제 할당

2안) 육아휴직 이용가능 맞벌이부부로서 1년 육아휴직기간 중 남편이 3개월 이상 이용 시 1년을 초과하여 1개월 무급 추가 가능

-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 1년 중 남편에 2개월 할당(양도불가능)

1-10. 자녀 있는 부의 출퇴근 군복무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는 사례 다수

▣ 개선방안

○ 자녀가 1명이상인 부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제도 활용

- 상근예비역의 선발기준에서 자녀 있는 부를 최우선 선발토록 함

1-11.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제도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직장분위기 및 동료업무 가중 등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육아휴직제도 이용 곤란

▣ 개선방안

○ 기존의 워크넷을 이용하여 직종별 대체인력풀을 제공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을 원하는 사업체 지원

- 네트워크에는 직종별 예비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원할 경우 바로 파견

1-12.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정부포상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포상훈격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

- 공무원연금법과 국가공무원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

▣ 개선방안

○ 「200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여 퇴직공무원 포상기준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 재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수공기간(5년)에 비해 육아휴직기간 비중이 높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불산입

1-13. 태아검진휴가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임신여성근로자의 건강 정기검진을 위한 임신검진휴가제 부재로 인해 건강검진을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하거나 퇴근 시간 이용

-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가 보장(근로기준법 제71조)된 것과 달리, 임신으로 생리휴가를 이용하지 못하는 임산부에게 오히려 불이익 작용

▣ 개선방안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월 1회 1일 혹은 월 2회 반일 선택하여 유급휴가 실시

* 휴가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1-14. 불임휴가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불임부부는 계속 증가할 것이나, 불임부부가 마땅한 시간을 내지 못하여 시험관아기시술, 불임치료 등을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불임휴가제도 도입

- 사용자는 불임휴가제를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내용(유·무급 여부,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각 기업의 내규로 정하도록 함
-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휴가 항목에 불임검사 및 치료 항목을 포함

○ 불임시술 비용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불임부부 가정 지원체계 구축

1-15. 입양에 유리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출산과 마찬가지로 입양의 경우도 부모와 입양자녀의 초기 적응을 위한 시간 필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1세 미만(2008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만3세 미만) 영아를 입양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외의 연령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20007년 입양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양아 연령과 관계없이 14일의 특별휴가제도 도입이 예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개선방안

○ 육아휴직(1년 미만)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현행 3세 미만)을 입양의 경우에 한해 만6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1-16. 공무원 임용유예기간에 임신·출산기간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법 상 임용유예기간에 임신·출산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여성에게 불이익

▣ 개선방안

○ 임신·출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역복무 등과 같이 공무원 임용유예기간에 임신·출산기간 포함토록 개선

1-17. 재직기간에 임신·출산 휴직기간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 별정우체국법(제34조 5항)에 의하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여 퇴직수당 지급

▣ 개선방안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법 관련 조항 개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06.11.1)에서는 임신,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제15조 제2항)

Ⅱ. 출산·양육관련 보육·교육부문 제도개선 방안

2-1. 다자녀가구의 학생에 대한 대학장학금 수혜 인센티브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의 학비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개선방안

○ 다자녀가정의 대학진학예정 자녀(학생)에게 학비경감 차원에서 장학금 수혜제공을 우선적 배려(현행 「장학금규정」에 다자녀가정 포함)

2-2. 육아지원시설의 입소 우선순위 제도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우선입소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장애아, 다자녀가정 등 취약가정의 수혜율 저조
○ 보육시설의 경우 입소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는 배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
○ 유치원 운영의 경우 입소우선순위에 대한 별도규정 미비

▣ 개선방안

○ 보육시설의 입소우선순위 관련 지침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장애부모에 장애아인 경우도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조정
○ 유아교육법 개정 또는 '유치원 운영지침(가칭)' 제정을 통해 입학우선순위 명시근거 마련
* 2007. 4. 23일 관계부처 담당자에 의하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2008년 3월 1일부터 다자녀가정 자녀의 입학우선순위 허용 추진 예정

2-3. 보육서비스 정보 공시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정보의 제공 및 수집 등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설치대상 지방보육센터(250개소) 중 32개소(12.8%)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
- 또한 중앙보육정보센터(여성가족부 운영)와 각 지방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모가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는데 미흡한 현실

▣ 개선방안

○ 온라인상에서 보육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 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보육시설간 공정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미 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시 방법, 관리주체 등 규정

2-4. 직장보육시설에 자녀생활 모니터링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자녀 있는 취업모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나, 최근 보육시설 내 영유아 학대사건이 발생하여 부모의 불안감 증대

▣ 개선방안

○ 직장보육시설에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내 각 반과 놀이시설 등 독립된 공간에 카메라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 단,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2-5. 국·공립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 내 여학생 비율 및 여성 석·박사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혼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현행 일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으로는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곤란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므로, 비적용사업장인 국가기관, 지자체, 사립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정부지원정책」, 2006)

▣ 개선방안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 보육시설 설치시, 융자혜택 부여

- 단, 고용보험 적용 의무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에 준하는 융자 혜택 부여

2-6. 공단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근로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제 가중

- 공단 내 개별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존재

▣ 개선방안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수(또는 근로자수)를 관리하는 공단에 대해 '공단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기준을 준용하여, 공단 내 입주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공단보육시설' 설치

2-7.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토록 하며,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실을 2층과 3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그러나 사업장이 전체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행 허용기준인 3층 이하에 보육시설 공간 확보 곤란

▣ 개선방안

○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한해 보육실 층수기준 완화

- 4층 이상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2-8. 직장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주가 인건비 지원(고용보험기금 정액 월 80만원) 이외의 추가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력 있는 보육교사의 퇴사를 유도 경향

-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에 비하여 직장보육시설 교사의 근무경력이 짧음

▣ 개선방안

○ 현행 인건비 지원 정액제를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며, 보육교사의 해당시설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인건비 기준을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장기과제로 검토
- 현행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적용

2-9.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영아의 경우(0~2세) 부모의 육아 특성상 수요가 많지 않아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영역이 진입할 여지 부족
-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약 77개소) 활용 및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아가방 사업(영아전담 보육시설) 추진
○ 그러나 현재 영아전담시설 신축에 대한 정책 방향은 영·유아 통합시설로 전환(기존 보육시설을 통해 영아보육 추진)

▣ 개선방안
○ 초등학교 내에 유휴교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아전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2-10.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원칙 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국공립보육시설이 저소득층과 장애아 등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우선 보장하는 기능 미흡(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보육서비스 미흡)
○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보육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으나 국공립의 장애아 보육은 미흡
○ 농어촌 국제결혼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보육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 강화 시급

▣ 개선방안

○ 국공립보육시설은 소외계층 보육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 마련

○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 역할분담 정립

-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지역 보육에 집중
- 소규모지역 단위로 저소득층, 장애아,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보육수요 분석 후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저소득층·농어촌 지역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을 통한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10인 이하) 설치 허용

2-11. 국·공립보육시설의 표준화된 위탁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거나,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위탁의 공정성 문제 발생

- 대부분 시·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관련 조례만 있을 뿐 보육시설위탁관련 명확한 규정 부재

○ 국공립보육시설의 소득계층·수준·지역별 불균형 분포

▣ 개선방안

○ 중앙정부가 국·공립시설의 운영위탁관련 '최소기준(조례 등에 반드시 포함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시설운영 위탁의 공정성 확보

- '최소기준'으로 시설위탁대상, 선정시기, 모집방법, 신청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원칙 등 포함 검토

2-12.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한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신고의무만 명시하고 학대 방치 시 별도의 처벌조항 없음
- 처벌조항 부재로 아동학대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대응 미흡

▣ 개선방안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면허정지, 벌금형 등의 처벌규정 강화

2-13. 보육시설의 방학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방학을 가질 수 없으나, 보육시설들이 5~10일간의 방학을 실시하는 것이 관행화
- 방학기간동안 자녀를 위탁할 곳이 없는 맞벌이부부의 곤란 야기

▣ 개선방안

○ 보육시설에서 방학을 실시하는 경우, 국고지원 중단 등의 벌칙 조항을 「보육사업안내」에 신설

2-14.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 중 교과 프로그램이 보충수업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

▣ 개선방안(기 추진 완료)

○ 2007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 3. 6) 발표

2-15. 육아지원시설 보육·교육비 투명화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료의 경우 통상 1회 2개월분 이상을 일시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시설에서 사용을 기피

○ 보육료 이외에 식비 등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투명성 문제 발생

- 보육료 등의 지출이 과도해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 원인(추가 출산 기피 등)으로 작용 가능

▣ 개선방안

○ 육아지원시설에서 수납 받은 보육료 등 비용에 대해 카드수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조치 의무화 부과

- 위 보육료 등의 수납 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조항(국고보조 중단 등)을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에 신설

○ 정부 보조 육아지원시설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의 의무화

- 일정기간 카드수납에 대한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및 민원사례에 대한 감독 강화(카드 비가맹시 정부지원 중단조치 필요)

2-16. 근로자 보육수당 지급 대상시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보육지원 의무를 이행토록 규정(영유아보육법 제14조)

○ 그러나 이는 보육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한해 지급되고 있어 유치원 이용 근로자가정에 상대적 불이익으로 작용

▣ 개선방안(기 추진완료)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유치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가능

2-17.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지원 연령기준 통일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 그러나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은 보육시설(12세까지)과 달리 유치원에서 5세까지로 고연령 장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상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무상교육 기회보장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유아 연령의 상향 조정

-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연령을 만3~5세에서 만12세 이하로 상향 조정

2-18.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상해보험 강제중복가입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법제화(영유아보육법)

-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보험료를 입학금 등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 부모가 다른 보험에 가입시 중복 발생

▣ 개선방안

○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 입소 당시 부모에게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기 가입시 추가(중복)가입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 의무화

- 관계기관에서는 동 조치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통한 확인 및 지도·강화

2-19. 장애아 상해보험 가입 거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법제화(영유아보육법)

- 그러나 민간보험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 및 보상 등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개선을 위해 장애인시설 종합보험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실적 저조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개선방안

1안) 상법 제732조항 삭제

2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예외 조항 신설

- 보육시설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상해보험 단체 가입 시, 상법 제 732조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도록 함

2-20. 모의 출산시 자녀인 학생의 출석처리를 경조사에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 경조사시 학생의 출석처리 관련 훈령(제676호)에서 출산이 제외

▣ 개선방안

○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가구성원(모)이 출산할 경우, 1일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 고려

*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교육 의미

Ⅲ. 출산·양육관련 보건·복지부문 제도개선

3-1. 산전초음파 검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산전초음파검진은 모든 임산부가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나,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산전초음파검진의 이용횟수·비용이 병원 및 구비한 초음파기기에 따라 다른 상황

▣ 개선방안

○ 산전 초음파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 보험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검진 범위와 횟수를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으로 구체화

3-2. 자연분만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은 출산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 2005년 1월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와 함께 관련 수가를 평균 54.4% 인상
* 2006년 정상분만수가: 173,790원(초산), 제왕절개수술 수가: 204,210원
○ 분만행위에 따르는 위험도(의료사고)와 소요시간(3시간~3일) 다르나 현행 수가는 소요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경우 동일하게 책정

▣ 개선방안

○ 분만소요시간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수가 항목 추가·변경
- 응급상황 발생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분만-진통과정의 특성, 분만대기실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분만-진통 집중 관리료' 신설 검토
- 분만전 감시 수가에 대한 현행 기준(12시간 이내 및 초과로 분류)을 보다 세분화하고,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 구간 추가
○ 건강투자 확대 차원에서 제왕절개분만 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연분만 수가 수준 인상

3-3.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비 지출이 영유아 양육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개선방안

○ 건강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영유아 외료진료 본인부담금 50% 감면 필요
- 이는 정책의 체감 효과면에서 효율적이며, 질환의 조기 발견 등으로 영유아기 보건수준 향상에도 기여

3-4. 출산·양육 관련 의료부문 교육·상담 서비스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제도에서 기본진료료 이외 상담료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

어 기본적인 일반진료의 수준을 넘어서는 육아상담 등 서비스 공급에 한계 및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곤란

- 교육·상담 내용은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수가를 책정한 것으로 보고, 이외의 상담료를 받는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

  * 당뇨·고혈압 등 7개 질환의 경우만 교육·상담료를 별도 항목으로 인정

▣ 개선방안

○ 규격화된 포괄적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된 항목(육아 상담·교육, 모유수유 진료상담·교육 등)을 중심으로 출산·양육관련 교육·상담을 건강보험 별도항목(비급여)으로 인정 반영

3-5. 산전후휴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방식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산전후휴가가 '사업중단, 실직·휴직'에 포함되어 복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새롭게 산정·납부하므로(국민연금법 제77조의2, 제77조의3), 전년대비 소득 상승시 재산정된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납부

- 고용보험에 의해 지불되는 시기에 개인의 신청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

▣ 개선방안

○ 산전후휴가 후 추납보험료(산전후 휴가기간 중 납부예외 금액)를 납부한 경우에 시행령 제6조의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시 표준소득월액의 재산정이 불요한 것으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산전후휴가 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토록 개정 필요

○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를 업무의 지속으로 간주하여(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인정하되 경력단절로 간주하지 않음), 연금보험료를 산전후휴가 이전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3-6. 임산부 주차 우대

▣ 현황 및 문제점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나, 승용차 이용 임산부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배려는 없음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도 임산부에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은 없음

▣ 개선방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임산부 이용근거 마련

-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후 민간주차장까지 확대 추진

3-7.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임산부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 개선방안(기 추진완료)

○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에 대해 요일제 면제 혜택 부여

3-8. 교통시설이용 아동의 편의 도모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교통시설이 성인1인이 동반하는 유(소)아 1인에 한하여 무임운송을 실시함으로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개선방안

○ 별도 좌석 지정을 받지 않은 대중교통(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철도 등)의 경우에는 6세미만 자녀 모두에게 무료운임 적용(보호자 동승시)

3-9.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임산부와 모성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권고적 사항이나 선언적 조문으로 규정되어 실질 효과 낮음

▣ 개선방안(기 추진완료)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임산부 보호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2007. 3. 9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3-10. 특수직 임신여성을 위한 복제규칙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교도관, 출입국관리국 등 특수직종의 경우 규정에 따라 복제·피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임신여성을 위한 별도의 복장·피복 규정이 없어 편의보장 부재

▣ 개선방안

○ 기존의 복제 규칙 등에 임부복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임신 여성 공무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 도모

3-11. 다태아 산모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적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산모도우미사업에서 쌍생아 출산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정에 산모도우미 비용으로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해산급여로 75만원을 지급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해산급여로 대체하여 1인당 500천원을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산후서비스 욕구, 양육 부담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미사업은 태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실시
- 현재 쌍생아출산 산모에게 3주 도우미(단태아 2주) 및 80만원(단태아 40만원) 비용을 지원하나, 삼태아 이상에 대한 규정은 부재

▣ 개선방안

○ 쌍생아 출산시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급여를 최소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산모도우미 비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증액
- 2007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서 쌍생아의 경우 최저 100만원, 3태아 이상은 최저 150만원 지원

○ 중·장기적으로 산모도우미지원을 중상층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3-12.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도우미 파견사업은 단기간 교육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가 곤란하며, 대부분이 가사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산후 모성 및 신생아 건강 증진에 미흡

▣ 개선방안(기 추진완료)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안내」 개정(2007. 2. 12)

3-13. 장애인여성의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등은 까다로워 복지와 의료·치료적인 성격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반해, 관련 의료서비스 부족
- 일반병의원에서 의료사고를 우려, 임신 장애인여성 기피 경향

▣ 개선방안

○ 장애인여성의 임신·출산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국공립병원에서 장애인여성의 임신·출산 우선적 배려 조치
- 국공립재활원에서 장애인여성의 임신·출산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체계 구축

- 장애인여성의 임신·출산시 보건복지부 call-center에 연락하면, 응급처지 및 전문의료기관(국공립대학, 국공립재활원 등) 안내 및 연계

3-14. 장애인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산모도우미사업은 장애인여성의 특수성을 고려않고 일률적으로 실시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산모에 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도우미 지원

-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산모도우미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사도우미사업만을 지원(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개선방안

○ 장애인 출산시,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

- 현재 2주(주 5일)에서 4주로 확대
  *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 지원 강구 (구체적인 방안 연구 필요)

○ 산모도우미 양성시 장애인여성의 임신·출산관련 교육내용 포함

3-15. 여성 청소년 생식기 건강 정보제공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미래 가임여성인 청소년의 생식기 건강이 중요하나, 사회적 관심과 관련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 건강관리가 미흡한 실정

- 청소년 대상 생식기질환의 원인 및 치료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부족

○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산부인과 방문을 두려워하는데다가 산부인과

방문이 '미혼모 낙태' 등의 그릇된 인식과 연계되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꺼리게 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청소년의 생식기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교육 강화

- 청소년기 생식기건강관련 지식과 의료기관 이용에 관해 교과서 수록(청소년 생식기건강관련 교육을 독립단원으로 편성 검토)

○ 청소년 생식보건관련 사이트 개발·운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협회 사이트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생식기건강 및 관련 의료기관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록한 '가정용 책자'를 on-line 제공 및 CD 무료 배포

3-16. 임신 준비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가임기여성(15~49세) 건강사업은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임산부에만 국한되어 있고,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은 배제

- 임신전 건강검진사업은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의 규정 중 사업대상을 '임산부'로 한정하였던 것을 '가임기여성'으로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 이를 근거로 임신준비 중인 여성(예비임산부),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가임기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관련 건강검진프로그램 제공
  - 교육·홍보사업 위주의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가임기여성을 위한 표준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제3부 결론부】

1. 제도 개선 방안 종합

□ 모성·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 임신기 여성의 보호·건강증진을 통해 평생건강관리의 기반 구축

- 산전검사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산후조리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립

○ 건강한 출산문화 조성을 위해 적정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자연분만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 여건 조성

○ 영유아기 일관성 있는 보육·교육 지원 체계 마련

- 기존 육아정책의 지원대상·지원방식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효율성 제고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 부모 취업, 영유아 발달특성 등을 고려, 정부의 지원 우선순위 조정
-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시스템 보완
-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 임신·출산·양육에 적합한 부모의 근로여건 조성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개인·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적 지원 강화
- 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휴가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
-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휴가제 도입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내실화하는 제도 정비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지원 및 기업인증제 실시로 제도적 지원 강화

2. 정책적 제언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을 수정·보완 필요

- 단기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의 수정·보완 작업 추진
- 중장기적으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정적 영향을 사전·사후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강구

3. 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 추진사항

○ 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감안되어 있어 절대적인 평가결과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실제 제도 개선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부처가 공청회 등을 통해 별도의 의견수렴 후 추진

○ 본 연구 결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연구가 진행된 기간 동안 해당 제도의 변경(관계 법령 개정 등) 가능

- 그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에 유의

○ 끝으로 본 연구는 기간과 예산 등의 한계성이 있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출산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례를 발굴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출산영향평가' 시스템이 구축·실행 필요
- 적어도 일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관련 연구 추진 필요